



문의	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	과장 문창진 서기관 남성호	042-481-5331 042-481-5766
 		2019년 9월 30일(월) 배포(09:00)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

디자인 출원 도면 제출이 수월해 졌어요!

-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개정, 10월 1일 출원 부터 시행 -

□ 특허청(청장 박원주)은 디자인 출원 편의 도모를 위해 도면을 현행 기본도면, 부가도면, 참고도면에서 기본도면과 참고도면으로 간소화한다고 밝혔다.

- * 기본도면 : 디자인의 전체적 형태를 표현한 사시도, 정·배면도, 좌·우측면도, 평·저면도
- * 부가도면 : 디자인을 구체적인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절단면도, 확대도, 전개도 등
- * 참고도면 : 디자인의 용도 등에 대한 이해 및 사용 상태를 표시한 도면

○ 그 동안 출원인은 도면종류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도면명칭을 종종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 심사관의 거절의견에 따라 도면명칭을 수정·보완하는 불편이 있었다.

○ 앞으로는 '부가도면'이 '기본도면'에 그대로 통합되어 디자인 출원시 부분 확대도, 절단도, 전개도 등은 부가도면으로 출원할 필요 없이 '기본도면'에 포함시켜 추가·제출하면 된다.

○ 이로써 출원인은 도면명칭에 대한 혼란 해소로 도면 작성을 쉽게 할 수 있고,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 없이 빠른 심사처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게 되었다.

- 또한, 현행 특수기호 글자체는 출원인의 사용의사와 무관하게 119자를 지정했어야 하나, 앞으로는 16자만 도시하고 그 이외에 등록받고자 하는 기호는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였다.
-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특수기호수를 최소화하고, 등록받고자 하는 글자체를 추가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하여, 출원인이 희망하는 특수기호를 편리하게 작성하여 등록받을 수 있게 되었다.
- 특허청 김성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“앞으로 출원인의 입장에서 디자인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출원·등록받을 수 있도록 도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.”고 밝혔다.
- 한편, 특허청은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개정·시행에 맞추어 개선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인 디자인심사기준도 함께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 남성호 서기관(☎ 042-481-576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도면종류 개정

<현행(3종)>

기본도면

【도면 1.1】 , 【도면 1.2】 ...

부가도면

【부가도면1.1】 , 【부가도면1.2】 ...

참고도면

【참고도면1.1】 , 【참고도면1.2】 ...

<개정(2종)>

기본도면

【도면 1.1】 , 【도면 1.2】

【도면 1.3】 , 【도면 1.4】

【도면 1.5】 ...

부가도면

【부가도면1.1】 , 【부가도면1.2】 ...

참고도면

【참고도면1.1】 , 【참고도면1.2】 ...

□ 특수기호 글자체

종 전 (119자)

【지정글자 도면】

! " # \$ % & ' () *
 + , ? . / : ; < = >
 { | } ~ ` ° ... "
 - - || \ ' ' " " []
 < > 《 》 「 」 『 』 【 】
 ± × ÷ ≠ ≤ ≥ ∞ ∴ ° °C
 Å ¢ ₩ £ ¥ ♂ ♀ ∠ ⊥ ^
 ∂ ∇ ≡ ≐ § ※ ☆ ○ ◎ ◇
 □ △ → ← ≪ ≫ √ ∝ ∫ ∮
 ∩ ∪ ∩ ∪ ∩ ∪ ∩ ∪ ∩ ∪
 ∏
 α °F % ◁ ◀ ◉ ◊ ◻ ◐ ◑
 † ‡ † ‡ † ‡ † ‡ † ‡ † ‡

개 정

【지정글자 도면 1】

, . ; {
 [(? !
 / @ # \$
 % & * ₩

【지정글자 도면 2】

특수기호

【지정글자 도면 3】

특수기호